

대학원 학생설계전공 제도 안내

1.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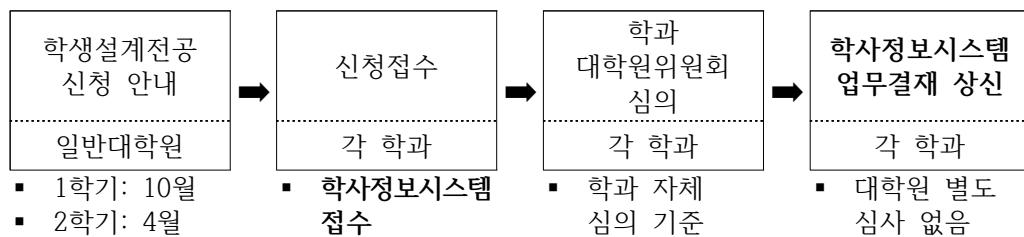
- 가. 학생의 소속 전공에서 운영하는 세부전공 외에 학생이 관심 분야 또는 진로 목표에 부합하는 세부전공을 설계하여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나. 학생이 원하는 세부전공을 설계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학과의 대학원위원회 승인을 거쳐 정식 세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다. 승인된 학생설계전공은 신청자 1인의 전공으로 한정함

2. 취지

- 가. 소속 전공에서 제공하지 않는 커리큘럼을 학생이 직접 설계하여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 나. 학생의 수요에 맞는 세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한 학사 운영 가능 (수요자 중심 교육 구현)
- 다. 향후 전공 간의 여러 학문 분야를 융합하여 세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3. 운영 방식

- 가. 적용 대상: 2024-1학기 현재 **2학기 이상 재학생** (학위과정 무관)
- 나. 신청 및 승인절차



다. 지도교수 배정

- 1) 학과 대학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이 원칙
- 2) 학생의 소속 학과 전임교원을 배정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함
- 3) 융합적 성격의 세부전공 신청을 희망할 경우, 복수의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을 공동 지도교수로 배정할 수 있음

라. 졸업 이수요건

- 1) 학생설계전공을 개설하는 학과의 내규에 산입하여 규정
- 2) 이수요건 충족여부는 학생의 소속 학과에서 관리
- 3) 학위논문 작성이 기본 원칙이나 석사학위의 경우, 학과에 따라 석사학위 논문 대체실적으로 졸업할 수 있음
 - 가) 대체실적 졸업시 초과 이수하는 6학점은 학생설계전공 관련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과정별 졸업학점수에 따른 세부 과목 이수요건은 소속 학과에서 정함

4. 학생설계 세부전공 설치에 따른 교과목 운영 예시

교과목	운영 예시
개별지도연구 교과목 활용	- 과목의 본래 취지(지도교수와 개별적으로 본인의 전공 관련 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에 따라 학생설계 전공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를 한 학기 동안 수행 - 융합적 성격의 세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복수의 소속 학과 전임교원과 개별지도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필요시 한 학기에 복수의 개별지도연구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 개별지도연구 과목은 석사/박사과정은 최대 3과목(6학점), 통합과정은 최대 4과목(8학점)까지 이수 가능
학생제안 교과목 활용 (4단계 BK21사업 참여 학과)	학생설계전공의 학습 수요를 충족하는 교과목이 학과에 없을 경우, 학생제안 교과목을 개설하여 활용
타 학과 교과목 또는 공동개설 교과목 활용	- 학생설계전공이 융합적 성격을 가질 경우, 타 학과의 교과목 또는 공동개설(cross-listing) 교과목 이수시 전공으로 인정 - 타 학과 교과목, 공동개설 교과목에 대한 전공 이수인정 기준을 학과 내규에 산입

5. 증명서 표기

가. 학생설계 세부전공 별도 표기

나. 표기 방법 예시

학 번	2023323456	학위과정	석사	생년월일	1998. 1. 1.
성 명	홍길동	학 과	국어국문학과		
영문성명	Hong Gil Dong	전 공	한류문화와현대문학(학생설계전공)	입학일자	2023. 9. 1.
증서번호	12345	학위명	문학석사	어학시험합격	2024. 11. 15.
학위등록번호	대학원(석)12345	학위수여일	2026. 2. 28.	종합시험합격	2025. 1. 5.

6. 학생설계전공 이수 포기

가. 학생설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기 종료일 기준 1개월 이내(1학기 기준 7월 20일경, 2학기 기준 1월 20일경)에 이수포기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나. 이수포기 신청서는 학생이 학과로 제출하며, 포기자가 발생할 시 학과는 학생의 지도교수, 소속 학과의 전공주임교수, 단과대학장의 재가를 거쳐 대학원으로 보고함

다. 학생설계전공 이수를 포기할 시에는 원소속 학과의 타 세부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할 수 있음

7. 참고사항: 복수 학과의 융합적 교과과정을 학습하고자 하는 경우, 융합전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대학원의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 참고)